

## Indonesia Tax Info 2022 년 2 월호

### COVID-19 조세 혜택 업데이트

인니 재무부 장관(MoF)은 COVID-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021 년말 종료된 일부 조세 혜택을 연장하는 규정을 2022 년 1~2 월에 발표했음:

- 2022 년 1 월 21 일 재무부 장관령 No. 3/PMK.03/2022 (PMK-3)는 재무부 장관령 No. 9/PMK.03/2021 (82/PMK.03/2021 및 149/PMK.03/2021 에 의해 수정됨)에 의거 제공된 조세 혜택 중 일부를 다시 도입함. ([Tax Info February 2021](#), [Tax Alert July 2021](#), 및 [Tax Alert November 2021](#) 참조)
- 2022 년 2 월 2 일 재무부 장관령 No.5/PMK.010/2022(PMK-5)는 재무부 장관령 No. 31/PMK.010/2021 (77/PMK.010/2021 및 120/PMK.010/2020 에 의해 수정됨)에 의거 규정된 적격 차량 판매 관련 정부부담 사치품판매세(LST) 혜택을 규정함. ([Tax Info April 2021](#), [Tax Info July 2021](#), 및 [Tax Info September 2021](#) 참조); 또한
- 2022 년 2 월 2 일 재무부 장관령 No.6/PMK.010/2022 (PMK-6)는 재무부 장관령 No. 103/PMK.010/2021 에 의거 규정된 적격 주택 판매에 대한 정부부담 부가세 혜택을 규정함. ([Tax Info August 2021](#) 참조).

#### In this issue:

1. [Update on regulations providing tax incentiv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 [Implementing guidelines for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s issued](#)

#### Customs Focus:

3. [Changes in export duty tariffs on exported palm kernel shells](#)

## PMK-3

PMK-9 대비 차별화된 PMK-3 의 조세 혜택은 아래와 같음:

- 수입 관련 선납법인세(소득세법 제 22 조) 면제;
- 월선납법인세 50% 감면; 및
- 특정 건설업 최종분리소득세(소득세법 제 4 조 2 항) 정부 부담.

PMK-3 는 2022 년 1 월 25 일부터 유효함.

### 수입 관련 선납법인세(소득세법 제 22 조) 면제

수입 관련 선납법인세 면제는 사업 분야 (Klasifikasi Lapangan Usaha(KLU))가 PMK-3 에 규정된 72 개 KLU 에 포함되어야 함.

해당 조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 웹사이트를 통해 면세 승인 (surat keterangan bebas (SKB))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서로 부터 SKB 가 발행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인 거부 서신이 발행됨. SKB 는 발행일로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함. 납세자가 KLU 를 변경할 경우 해당 SKB 는 변경일로부터 유효하지 않게 됨.

조세혜택 수령 납세자는 차월 20 일까지 세무서 웹사이트에 월별 조세혜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월선납법인세 50% 감면

사업분야가 PMK-3 에 나열된 156 개 KLU 에 포함된 경우 납세자에게 월선납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됨.

해당 조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 웹사이트를 통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세무서는 해당 납세자의 조세혜택 수혜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서를 발행함. 조세혜택은 납세자의 통지서 제출 시점 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적용됨. 납세자가 KLU 를 변경할 경우 해당 혜택은 변경일로부터 유효하지 않게 됨.

2022 년 1 월부터 조세 혜택을 적용하려면 PMK-3 가 발효되는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즉 2022 년 2 월 24 일까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조세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회계월 종료 후 20 일까지 세무서 웹사이트에 월별 조세혜택 집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The following incentives that were previously provided under PMK-9 were not re-introduced by PMK-3, namely:*

- *Employee income tax borne by the government;*
- *Final tax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orne by the government; and*
- *Preliminary refund for VAT overpayment.*

## 특정 건설업 최종분리소득세(소득세법 제 4 조 2 항) 정부 부담

특정 건설 활동에 대한 소득세법 제 4 조 2 항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음. 본 조세혜택 수혜 납세자는 관련 정부 기관에서 농업 부문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노동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지시 받은 납세자임. 즉, 관개용수 시스템 제고 프로그램.

해당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조세원천징수자는 2022 년 9 월 30 일까지 세무서 웹사이트에 수정사항이 포함된 조세 혜택 집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본 조세 혜택은 2022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적용됨.

## 기타 사항

납세자는 PMK-3 에 따른 수입 및 월선납법인세에 대한 소득세 제 22 조 감면 신청 이전에 2020 년도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출완료해야 함. 신고서 제출 면제 납세자는 예외가 적용됨.

이전 재무부 장관령 수혜 납세자가 PMK-3 에 따른 조세혜택 활용시 관련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적정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PMK-3 를 통해 PMK-9 에 따른 조세 혜택을 활용하는 납세자는 2022 년 3 월 31 일까지 2021 회계연도에 대한 실현 신고서를 (신고서 수정사항 포함)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세 혜택은 해당 기간 동안 무효가 되며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함.

## PMK-5

자동차 산업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재무부 장관은 특정 유형의 차량 판매 관련 정부부담 사치품 판매세 형태로 조세 혜택을 규정하는 PMK-5 를 발행했음.

PMK-5 에 따라 최소 80%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음 유형의 차량 판매는 정부 부담 사치품판매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차량 유형  | 사치품 판매세율 | 정부부담 사치품 판매세율   |
|--|----------|---|
| 에너지 절약 및 on-the-road 가격이 IDR 2 억 이하인 저가 4 른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파크 점화 엔진, 최대 1,200cc 의 실린더 용량, 최소 20km/l(km/l)의 연료 소비 또는 최대 120g/km(gr/km)의 CO2 배출 수준; 또는</li> <li>최대 1,500cc 의 실린더 용량과 최소 21.8km/l 의 연료 소비 또는 최대 120gr/km 의 CO2 배출 수준을 갖춘 디젤 또는 세미 디젤.</li> </ul> |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 (1 January to March 2022);</li> <li>66⅔% (1 April to June 2022); and</li> <li>33⅓% (1 July to 30 September 2022).</li> <li>100% (2022 년 1 월 1 일 ~ 3 월)</li> <li>66% (2022 년 4 월 1 일 ~ 6 월); 및</li> <li>33% (2022 년 7 월 1 일 ~ 9 월 30 일)</li> </ul> |

| 차량 유형   | 사치품 판매세율 | 정부부담 사치품 판매세율                   |
|---|----------|---------------------------------|
| 10 인 미만의 차량, 최대 1,500cc 의 실린더 용량, on-the-road 가격이 IDR 2 억~ IDR 2 억 5 천만 차량:<br><br>• 스파크 점화 엔진, 15.5km/l(km/l) 이상의 연료 소비 또는 150g/km(gr/km) 미만의 CO2 배출 수준; 또는<br>• 17.5km/l 이상의 연료 소비 또는 150gr/km 이상의 CO2 배출 수준을 갖춘 디젤 또는 세미 디젤. | 15%      | 50% (2022 년 1 월 1 일 ~ 3 월 31 일) |

조세혜택 대상 차량 목록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적격 차량을 판매하는 부가세 납세사업자는 거래 코드 "01"을 사용하고 "PPnBM DITANGGUNG PEMERINTAH ...% EKS PMK NOMOR 5/PMK.010/2022 SENILAI Rp ..."가 스탬프/첨부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해당 월의 부가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함. 부가세 환급 및 인도되는 차량의 세부 목록은 2022 년 10 월 31 일까지 제출된 경우 조세혜택 실현 신고서로 처리됨. (또는 2022 년 4 월 30 일까지, 어느 조세혜택을 수령하였는지에 따름). PKP 는 회계 월이 끝난 후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인도되는 차량의 세부 목록을 제출해야 함.

PMK-5 는 2022 년 2 월 2 일부터 유효함. 이 규정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판매에 대해 2022 년 1 월에 발행된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수정될 수 있는 경과 규정이 포함됨.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는 구매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차량 인도가 조세 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상환해야 합니다.

### PMK-6

PMK-5 와 마찬가지로 MoF 는 부동산 분야 구매력 유지를 위해 조세 혜택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수정과 함께 만료된 PMK-103 에 따라 조세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PMK-6 을 발행함.

PMK-6 은 PKP 의 개인소유자(구매자) 대상 주상주택 (일부 주변 토지 또는 정원이 있으며 사무실과 상점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거용 부동산) 및 주거 유닛 판매에 대해 정부 부담 부가세 조세혜택을 부여함. 해당 부동산은 신규 부동산이며 바로 입주 가능하여야 함. 2022 년 3 월 31 일까지 공공사업/주택부(장관/MPWH) 및/또는 국민 주택연금 관리기관(Badan Pengelola Tabungan Perumahan Rakyat (BP TAPERA))에 등록되어야 함.

PMK-6 은 부동산 판매 가격이 IDR 20 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부부담 부가세 비율을 50%로 줄이며 판매 가격이 IDR 20 억에서 IDR 50 억 사이인 경우 25%로 줄임. (이전에는 정부 부담 부가세 비율이 각각 100%와 50%였음).

해당 조세 혜택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9 월 30 일 사이에 등기이전 (berita acara serah terima) 된 주상주택 및 거주 유닛을 대상으로 함.

구매자가 2022 년 2 월 2 일(PMK-6 발효일) 이전에 취득과 관련하여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최초 선지급 또는 분할지급이 2021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됨;
- 매각 날짜(등기이전서로 입증)는 2022 년 1 월 1 일에서 2022 년 9 월 30 일 사이 정산됨; 또한
- 이 조세 혜택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2022 년 9 월 30 일 사이에 지급된 나머지 할부 및 정산에 대해 제공됨.

부동산을 판매하는 PKP 는 거래 코드 "01"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부분) 및 "07"(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 부분)을 사용하여 PMK-6 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함.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해당 부가세 신고서에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서가 2022 년 10 월 31 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되는 경우 조세 혜택 실현 신고서 역할을 함. (수정 신고서 포함).

정부가 부담한 부가세는 세무당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상환해야 합니다:

- PKP 가 마감일까지 MPWH 및/또는 BP TAPERA 에 부동산을 등록하지 않았음;
- 매각된 부동산 또는 배송 프로세스가 조세 혜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
- 개인이 조세 혜택에 대한 자격이 없거나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은 자산을 두 개 이상 소유하고 있음;
- 부동산 매각이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9 월 30 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음;
- 부가세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부동산은 최초 매각 후 1 년 이내에 양도되는 경우; 또는
- 등기이전서가 MPWH 에 등록되지 않았음

PMK-6 은 부동산이 PMK-103 에 따른 조세 혜택 요건을 충족하지만 인도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이전서가 2022 년 9 월 30 일까지 완료되면 조세 혜택 조건은 PMK-6 을 따름. PMK-103 에 따라 발행된 관련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수정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부가세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서도 수정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함. 이러한 부가세 환급 제출 마감일은 2022 년 10 월 31 일 까지임. PMK-6 은 경과 동안 거래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신청 사례를 제공합니다.

*The government-borne VAT facility on the sale of landed houses and residential units is extended until 30 September 2022.*

## 해외자회사 규정에 대한 시행 지침 발행

2021 년 12 월 28 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해외자회사 (CFC) 규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세무 당국에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훈령 No. SE-55/PJ/2021(SE-55)을 공표했음. SE-55 는 2017 년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CFC 규정(즉 93/PMK.03/2019 (CFC 규정에 대한 PMK)에 의해 수정된 107/PMK.03/2017)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불확실성을 제거함. ([Tax Alert August 2017](#) 및 [Tax Alert July 2019](#) 참조).

*SE-55 addresses uncertainties on the implementation of PMK on CFC rules.*

SE-55 에서 명시한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 배당금 시기

CFC 규정에 대한 PMK 는 CFC 가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간주배당금 시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납세자가 최종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부 국가의 상황은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납세자가 배당 간주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기한에 대해 중간 및 최종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CFC 가 있는 납세자 사이에 혼란이 발생함. SE-55 는 CFC 의 관할권에 중간 신고서 제출 옵션이 있는 경우 배당금이 최종 보고서 제출 마감일 후 4 개월 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19 회계연도 (FY2019) 및 그 이후의 소득 간주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

2019 회계연도부터 수동소득만 CFC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관련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 그러나 공제 비용의 기준은 93/PMK.03/2019 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SE-55 는 CFC 의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조세규정에 의거 수동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결정해야 함을 규정함.

### 다른 관할권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의 손실에 대한 CFC 처리

SE-55 는 다음을 명확히 합니다.

- CFC 손실은 인도네시아의 기타 소득을 상계하는 데 사용할 수 없음;
- 일개 조세관할권의 CFC 손실은 다른 조세 관할권의 CFC 이익과 상계될 수 없음;
- 동일한 조세 관할권 내에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CFC 가 있는 경우 손실과 이익은
- 해당 관할권의 CFC 간에 상계될 수 있음. 이러한 CFC 간의 손익 상계로 인해 이익
- 포지션이 발생하면 간주 배당금이 발생함. 그러나 상계로 인해 손실 포지션이
-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은 인도네시아의 기타 소득 또는 다른 조세 관할권의
- CFC 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전/보상되지 않음.

## 적용환율에 대한 설명

SE-55 는 간주배당소득, 실제 배당금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적용 환율 및 날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항                                  | 적용환율  | 환율 날짜                             |
|-------------------------------------|---|-----------------------------------|
| 간주 배당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네시아중앙은행 (BI) 중간 환율; 또는</li> <li>통화가 BI 중간 환율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국제 시장의 일일 현물 환율</li> </ul>                | 배당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              |
| 실제 배당금 수령                           |   | 배당금을 받은 날짜                        |
| 다른 관할권에서 납부 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무부 장관이 결정한 환율<br><br>USD 로 장부를 유지하는 납세자는 USD 이외의 통화로 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BI 중간 환율 또는 국제 시장에서 일일 현물 환율(통화가 BI 중간 환율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을 사용하여 USD 로 변환해야 함 | 다른 관할권의 소득세 납세기한, 납부일 또는 원천징수된 날짜 |

간주배당금 계산시 다른 환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과 같은 실수령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 계산한 간주배당금이 실제 배당금보다 많은 경우 초과 간주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은 연도부터 5 년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 계산된 간주배당금이 실제 받은 배당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받은 초과 배당금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배당금을 받은 연도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함.

## 트러스트에 CFC 규정 적용

CFC 가 트러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을 통해 소유되는 경우 트러스트 또는 유사한 법인은 트러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통과"됩니다. 청산인은 CFC 를 소유한 당사자로 간주되어 간주배당금을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청구합니다. 단, 청산인이 사망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가 CFC 를 소유한 당사자로 간주됨.

## 연간 소득세 신고 시 간주배당금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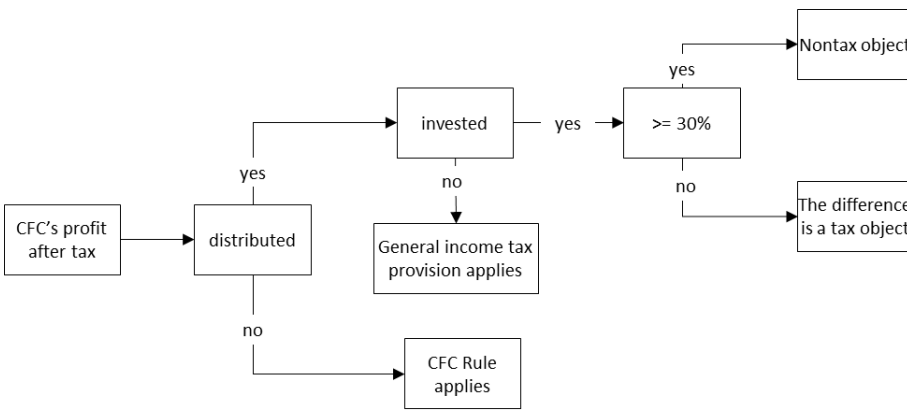
CFC 규정에 대한 PMK 는 CFC 와 관련된 공제 가능한 외국 소득세 신고 양식을 제공하지만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서 간주배당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이는 납세자가 간주배당금을 받았지만 실제 배당금이 아직 분배되지 않았으며 사용할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 SE-55 는 CFC 의 조세 관할권에서 지급 또는 원천징수된 배당 소득세뿐만 아니라 간주배당금 및 실제 수령한 배당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CFC 에 대한 옴니버스법의 영향

2020 년 11 월 2 일자 법률 No. 11(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률)에 따르면 주식이 공개되지 않은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세후이익은 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당금의 특정 부분이 실제로 분배되고 특정 적격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 제외합니다 ([Tax Info March 2021](#) 참조). 이 조항은 납세자들 사이에 CFC 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는데 SE-55 는 CFC 규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됨을 명시함:

- CFC 는 인도네시아 납세자에게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음; 또는
- 분배된 배당금은 옴니버스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적격 상품에 인도네시아에 투자되지 않음.

SE-55 는 참조의 편의를 위해 아래 다이어그램을 제공함.



CFC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는 SE-55 를 참조하여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SE-55 에 맞게 이전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 관세 포커스

### 수출 팜커널 껍질에 대한 수출 관세 변경 사항

국가 외환보유고 향상을 목표로 팜유 기반 산업 상품 수출의 경제적 잠재력과 시장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MoF 는 규정 No. 1/PMK.010/2022(PMK-1)를 공표하여 수출 관세 대상 상품 및 세율의 결정에 관한 규정 No. 13/PMK.010/2017(PMK-13)을 개정함.

PMK-1 및 PMK-13 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수출 관세가 부과되는 6 가지 유형의 수출 상품을 결정함.

- 가죽 및 목재;
- 코코아 콩;



- c. 팜유, crude palm pills 및 그 파생물
- d. 금속 광물 가공 제품; 및
- e. 특정 조건의 금속 광물 제품.

PMK-1 은 위의 c 에 언급된 (팜유, crude palm pills 및 그 파생물) 수출 상품 그룹 중 하나에 속하는 입자 크기가 50 메쉬 이상인 플레이크 및 분말 형태인 팜커널 껍질의 수출 관세를 추가로 변경합니다.

다음은 PMK-1 에 따라 결정된 기준 가격 범위(Column 1 ~ 12)를 기준으로 그룹화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 관세 변경 세부 테이블입니다:

| 과목                                    | 입자 크기가 50 메쉬 이상인 플레이크 및 분말 형태인 팜커널 껍질 |                                  |
|---------------------------------------|---------------------------------------|----------------------------------|
| HS Code                               | Ex 1404.90.91                         |                                  |
|                                       | 이전 규정 (PMK-13)<br>(USD/metric ton)    | 새 규정 (PMK-1)<br>(USD/metric ton) |
| Column 1 (≤ 750 USD/ton)              | 7                                     | 3                                |
| Column 2 (> 750 ~ ≤ 800 USD/ton)      | 10                                    | 3                                |
| Column 3 (> 800 ~ ≤ 850 USD/ton)      | 11                                    | 4                                |
| Column 4 (> 850 ~ ≤ 900 USD/ton)      | 13                                    | 5                                |
| Column 5 (> 900 ~ ≤ 950 USD/ton)      | 16                                    | 6                                |
| Column 6 (> 950 ~ ≤ 1,000 USD/ton)    | 18                                    | 7                                |
| Column 7 (> 1,000 ~ ≤ 1,050 USD/ton)  | 20                                    | 8                                |
| Column 8 (> 1,050 ~ ≤ 1,100 USD/ton)  | 22                                    | 9                                |
| Column 9 (> 1,100 ~ ≤ 1,150 USD/ton)  | 24                                    | 10                               |
| Column 10 (> 1,150 ~ ≤ 1,200 USD/ton) | 26                                    | 11                               |
| Column 11 (> 1,200 ~ ≤ 1,250 USD/ton) | 28                                    | 12                               |
| Column 12 (> 1,250 USD/ton)           | 30                                    | 13                               |

PMK-1 은 2022 년 1 월 1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mailto: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http://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